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6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 대 260평’ 위에 존재하는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강판지붕(샌드위치판넬 지붕) 단층주택 65.85㎡를 철거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2.

1. 24.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3,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진숙

별지